

「회계학연구」 편집 규정

제 정 : 1977.01.15
최종개정 : 2000.06.09
개 정 : 2014.06.19
개 정 : 2016.12.17
개 정 : 2019.06.21
개 정 : 2019.07.11
개 정 : 2019.12.14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회계학연구」 편집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회계학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발행 등의 편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 ① 「회계학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로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회계학연구」의 투고 및 발간과 관련된 연구 윤리와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회계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따른다.

제 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방침)

- ① 「회계학연구」는 회계학(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발표의 장으로, 사회과학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 ② 「회계학연구」는 회계학 이론에 대한 공헌, 회계 정책 및 실무의 개선, 회계교육의 발전 등과 같이 회계학의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면에 대한 연구의 장을 넓히도록 노력한다.
- ③ 「회계학연구」는 회계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해답이나 새로운 토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학문적으로 공헌한다.

제4조(임무)

- ① 「회계학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는 「회계학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에 의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회계학연구」의 편집,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업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회계학연구」의 편집방침
2. 「회계학연구」의 투고규정
3. 「회계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논문의 게재여부의 판정
4. 논문의 게재순서의 조정
5. 기타 「회계학연구」의 발간과 관련한 사항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

- ①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는 한국회계학회장, 차기한국회계학회장, 「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차기한국회계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1개월 이전에 선정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편집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편집위원장의 자격)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회계학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한국회계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으로 3명(공동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한국회계학회 회원으로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10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에 10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의 논문으로 환산하며, 해외학술지에 대한 논문의 환산율은 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최근 5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에 5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해외학술지에 대한 논문 환산율은 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② 편집위원은 회계학의 각 분야(재무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세무회계, 회계정보시스템 등)에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 ③ 편집위원은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대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전라/광주, 제주, 미주, 미주외 외국 지역의 10개 지역 중 최소 5개 지역 이상으로부터 편집위원을 구성한다. 단, 미주 및 미주외 외국 지역에서는 반드시 1인 이상의 편집위원이 포함되도록 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1인을 편집간사로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중 2명까지 편집간사로 선정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한국회계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9조 (편집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의 제반 과정에 대한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비공개로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 그 절차가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⑥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계학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심사위원 간 또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차이가 크고 투고자의 이익제기가 있는 경우 게재 및 재심사여부 등을 3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③ 심사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규정을 정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회계학연구」에 투고할 수 없다. 편집위원장의 인수인계시 신임편집위원장 내정자의 투고논문은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완료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이 논문 게재 여부나 게재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독자들이 후원 기관이나 발행 기관의 역할과 성격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내에서 영업 및 기타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편집 및 심사 과정과 분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3년 이내 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 ① 편집위원장은 매 6개월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회계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을 최종 확정한다. 「회계학연구」는 매년 6회(2, 4, 6, 8, 10, 12월의 말일) 발행한다.

제13조(의결)

편집위원회의 개최 시에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14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5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회계학회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3장 논문투고

제16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 ① 「회계학연구」에 투고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회계학연구」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공저자 중 「회계학연구」 회원이 있거나,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게재신청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간행물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는 책임을 진다. 간행물이라 함은 종이,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국제표준 도서번호 (예: ISBN, ISSN)와 같은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 ③ 게재신청한 논문은 다른 연구자의 연구를 정확하게 인용 및 참고의 표시를 충실히 하며, 논문과 함께 논문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 ④ 외국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의 회계제도나 회계관련 과제를 분석한 논문도 우리나라의 회계제도 및 회계연구에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게재신청할 수 있다.
- ⑤ 학술회의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의 명단과 소속을 게재신청서에 제출해야 한다.
- ⑥ 제출되는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가 지며, 데이터의 수집·분석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관한 최종책임도 저자가 진다.

제 17조(논문 저자 표시)

- ① 「회계학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에는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 대하여 그 성명, 소속, 직위, 연락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② 제1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저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여도에 대한 증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 및 증명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회계학연구」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 저자의 성명, 논문 게재 당시 소속, 직위, 연락처를 게재논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재학년도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경우 「회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를 제공한다.

제18조 (윤리규정 서약)

저자는 연구수행과 연구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한국회계학회가 규정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숙지한 후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하지 않았으며, 연구자는 한국회계학회가 제정·공표한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하였습니다.”라는 문구를 게재신청서에 표기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해야 한다. 영문 논문의 경우는 “This manuscript has not been published previously and is not under consideration by another publisher or journal, and the study in this manuscript has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Ethical Guidelines set forth by the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이라는 내용을 표기한다.

제19조(논문게재신청과 투고료)

- ① 「회계학연구」에 게재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게재신청서와 함께 「회계학연구」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 ② 「회계학연구」의 게재신청서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③ 별도의 투고료는 없다.

제20조(논문파일발송 및 게재료)

- ① 「회계학연구」에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편집규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word processor)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 게재료는 20만원이며 최종 논문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논문의 페이지가 20페이지를 초과하는 경우 1페이지 초과 시 1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게재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논문 게재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논문 및 게재료의 반환불가)

- ① 「회계학연구」에 게재신청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게재확정 후 이미 납부된 게재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제 4장 논문심사

제22조(심사대상논문)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 논문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기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회계학연구」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과 논의하거나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여 그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 ② 심사자와 논문 작성자가 서로 알지 못하도록 익명성을 보장하는 이중맹검 심사(double-blinded review)를 한다.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각각의 심사자에게 기고된 논문의 저자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각각의 심사자에게 5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최초심사의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10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24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심사위원은 다음에 계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 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2. 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②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게재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시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의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25조(심사기한)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일자를 기준으로 4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도록 심사 완료 기한을 정하고 이를 심사의뢰 내용에 포함시킨다. 다만 심사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조속한 심사완료료를 위하여 제3의 심사자로 심사의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①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간내에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④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게재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⑥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⑧ 심사위원은 「회계학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7조(심사판단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문내용의 효과적 의사전달
5. 기타 편집기술상의 요건에 부합되는 정도

제28조(심사의견)

-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3주(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간내에 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연구주제의 중요성, 연구내용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내용의 효과적인 전달, 논문의 구성 및 기타), 종합평가(일부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게재반대), 수정·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반대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④ 논문심사의견서의 종합평가는 아래의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부 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 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가능: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 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시킨다.
 3.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용을 대폭 수정·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시킨다.
 4. 게재 반대: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회계학연구」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 반대의 사유를 게재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근거를 제

시하여야 한다.

제29조(심사결과통보)

- ① 편집위원장은 1차심사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보고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의 여부(게재확정, 게재반대 혹은 저자게재포기)를 최종결정한 경우 게재신청자 및 각 심사위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일자를 기준으로 4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도록 심사 완료 기한을 정하고 이를 심사의뢰 내용에 포함시킨다. 다만 심사가 지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조속한 심사완료 를 위하여 제3의 심사자로 심사의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파일)과 함께 수정설명서(답변서)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0조(수정 요청 및 수정논문 제출)

편집위원장은 제23조(심사결과와 판정)에 규정된 게재반대 확정 의 경우를 제외하고 논문의 기고자에게 다음 라운드 심사를 위하여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다만 수정 요청을 받은 논문의 기고자가 수정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된 논문을 다시 기고하지 않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제23조(심사결과와 판정)의 「게재반대」로 간주한다.

제31조(재심사)

- ① 논문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다시 재심사한다.
- ② “일부수정후게재”심사의견을 제출한 심사자는 다음 라운드의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③ 재심사는 심사위원이 “일부수정후게재” 또는 “게재반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재심사를 반복하되, 총 심사는 4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32조(최종심사판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표> 「회계학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에 의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반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제33조(재투고)

- ① 게재반대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재투고할 수 있다.
- ② 재투고의 경우 저자는 논문이 재투고된 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재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신규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준용한다.

제5장 논문발행

제34조(논문게재대상)

- 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회계학연구」에 게재한다.
- ②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게재확정의 통보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될 논문집에 우선 게재한다.

제35조(논문게재순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의 종결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회계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논문발행권호 및 발행일의 명시)

「회계학연구」에 권호와 발행일을 명시한다.

제37조(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의 명시)

「회계학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에 대하여는 논문접수일 및 게재확정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8조(후원기관의 명시)

「회계학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 한다.

제39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학회임원의 명시)

「회계학연구」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성명과 소속을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40조(「회계학연구」 배부)

- ① 「회계학연구」를 발행하는 경우 논문게재신청자 등에게 「회계학연구」 및 동 별쇄본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회계학연구」를 회원, 특정기관 혹은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41조(논문내용의 책임)

저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2조(논문판권, 복사배포권)

- ①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회계학회가 갖는다.
- ② 논문의 게재신청자가 논문의 복사배포권을 한국회계학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계학연구」에 게재신청할 수 없다.

제43조(발행시기)

「회계학연구」은 연 6회(2, 4, 6, 8, 10, 12월의 말일)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편

집위원회에서 특별호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44조(논문의 홈페이지공지)

「회계학연구」의 논문을 한국회계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5조(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46조(학술지의 관리)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제정한 “등재(후보) 학술지 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한다.

- ① 편집위원장은 「회계학연구」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지침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회계학연구」발행 후 즉시 한국연구재단에 도착되도록 감독하며, 회원들에게 배포되도록 조치한다.

제47조(재정관리)

「회계학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제48조(관리대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계학연구」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회계학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표> 「회계학연구」 심사결과 처리기준

심사결과			처리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게재반대	게재반대	기타의견	게재반대 확정
게재반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반대 판정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게재반대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능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게재반대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게재반대 또는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수정후재심사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능	수정 논문에 의한 심사위원 A, B, C의 수정후재심사 결과에 의하여 판정
수정후재심사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게재가능	수정후게재가능	
일부수정후게재	일부수정후게재	기타의견	게재확정